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11.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11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전용봉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제894호 부칙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을 연장함(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2013.7.26.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2013.7.1. 시행)
-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관광호텔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중 “제5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12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 적용시한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2012년 구세 감면 내역

세목	내용	건수	금액(천원)	비고
계		36	231,505	
재산세	시장정비사업 감면	2	2,725	
재산세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	11	227,038	
재산세	전직대통령 주택 감면	1	1,737	
등록면허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 공제	22	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